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517호(2019.9.27.)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22호(2021.11.12.)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“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” 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-004호(2023.1.11.)로 기 공고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

1. 변경사유

1)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이주대책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

2) 公社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(2020. 6. 2. 공포) 적용시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

2. 변경내역

1) 이주대책 : 이주자택지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

2) 생활대책 : 영업자(1군 및 2군) 대상자 기준 정정

3. 비 교 표

□ 2. 이주대책(거주 소유자)

구 분			당 초	변 경
이주자택지	선정기준	1순위	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※ `89. 1. 24. 익일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, 단체는 제외	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※ `89. 1. 24. 익일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, 단체는 제외
		2순위	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협의보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용된 자 또는 공사가 정한 시기까지 자진이주하지 아니한 자 ※ `89. 1. 24. 익일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, 단체는 제외	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지 아니한 자 ※ `89. 1. 24. 익일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, 단체는 제외
	공급방법	1순위	위치 우선 지정권 부여(다만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한 공급)	순위별 전산 추첨
		2순위	1순위 공급 후 잔여 필지에 대한 위치 지정권 부여 (다만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한 공급)	

□ 5. 생활대책 - 2)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

구 분		당 초	정 정
영업자	1군	지구지정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허가, 면허, 신고 등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영업보상(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축산 등 포함)을 받은 자	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 등(허가·면허·신고 등)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
	2군	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계속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(축산,자유업포함)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 ※ 축산의 경우 축사 등 200㎡ 이상의 시설(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)을 갖춘 경우	· 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· 지구지정 공람공고일(`18. 9. 21.) 1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1호의 단서(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)에 따라 영업보상을 받은 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규정(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)에 따라 영업보상을 받은 자

2023년 8월 17일

인천도시공사